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제 주 4 · 3 사 건 진 상 규 명 및 희 생 자
명 예 회 복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 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다. 유골의 발굴 등(안 제10조)

-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유골의 발굴·수습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규정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조정(안 제13조제2항)

- 신고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로 재설정

마. 보상금의 신청·결정·지급 등(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의 공고 및 그밖에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상금의 결정 및 통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안 제20조)

-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보상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신청인, 신고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심의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상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보상금 지급 신청순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⑤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심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심의·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기구)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료지원, 장애등급 판정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유골의 발굴 등)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희생자 결정통지서

나.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다.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후유장애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희생자로 결정될 당시 보다 후유장애의 정도가 악화된 경우 등 희생자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수형인의 구금사실 및 구금기간, 집행유예 기간, 벌금액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수형인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희생자로 결정될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추가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2. 희생자가 사망하여(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유족 결정통지서(법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한다)

다.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및 신청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한다)

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서(상속인 등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한다)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 또는 희생자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순서에 따라 해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둘 이상의 일간지와 일본 등 국외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청기간, 신청순서, 접수처, 신청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보상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읍·면·동장

⑤ 법 제16조제3항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순위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이면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상속인 등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상속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후유장애 또는 수형인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서류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이나 구금일수 등 산정을 하되,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서류로 장애등급 판정이나 구금일수 등 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의5 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9조(보상금의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 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실무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7호의7 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포함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1과 같다.

② 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2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제13급으로 한다.

⑤ 장해등급은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진단서 등을 근거로 판정한

다. 다만, 신청인이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새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판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진단서 등으로 장애 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진단서 등과 그 밖의 후유장애 관련 간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법제16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란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1조(보상금 지급 결정의 변경 등) ① 상속인 등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이후에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 등을 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법제18조의4제1항2호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다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를 “따라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로, “이하의”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과위원회”를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회”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과위원회는”을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는”으로, “분과위원회의”를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

항을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분과위원회 등)”을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 제1항 제1호다목 중 “진단서”를 “진단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심의·결정 등)”을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3조)제4항 중 “제11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8 서식의 동의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결정서 정본

2. 대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과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로

같음할 수 있다.)

3.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② 보상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료지원금 지급방식
(은행계좌)을 준용한다.

제23조(지연 이자) 법 제17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의 본문에 따른 이자
율을 말한다.

제26조(종전의 제16조)제3항 중 “제15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
다.

제27조(종전의 제17조) 중 “제9조”를 “제2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18조)제4항 중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신고 청구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장애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20조제1항 관련)

등 급	장 해 내 용	노동력 상실률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100
제2급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100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100
제4급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90
제5급	7. 두 발을 "리스푸랑" 관절이상에서 상실 한 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80
제6급	6. 두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70

제7급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60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애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8급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0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제9급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40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1. 두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10급	1.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0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애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20

제12급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남은 자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애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5
제13급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0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이 일부를 상실한 자	5

- | | |
|---|--|
| 7. 한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
|---|--|

- (주)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수지의 상실이란 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수지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수지의 폐용이란 수지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또는 제1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족지의 상실이란 족지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족지의 폐용이란 제1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제1족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장애로 본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2개 부위 이상의 장애 종합평가 등급표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9	8	8	8	8	8	7	6	5	4	3	2	1
8	8	7	7	7	7	7	6	5	4	3	2	1	1
7	7	6	6	6	6	6	5	5	4	3	2	1	1
6	6	5	5	5	5	5	4	4	4	3	2	1	1
5	5	4	4	4	4	4	3	3	3	2	1	1	1
4	4	3	3	3	3	3	2	2	2	1	1	1	1
3	3	2	2	2	2	2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주): 별표 2. 장애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에 의한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후유장애 희생자는 이 표에 의하여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의하여 4급이 된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1호 서식(3쪽 중 제3쪽)을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여부			
국가유공자 등 여부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 없음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배·보상 여부 등	[]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실 있음 []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실 없음		
	수령금액	수령일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희생자 결정통지서 1부 나.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2. 희생자가 사망하여(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유족 결정통지서 1부(법 제16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희생자의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및 신청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 1부(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바. 별지 제7호4서식의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서(상속인 등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사. 그 밖에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 또는 희생자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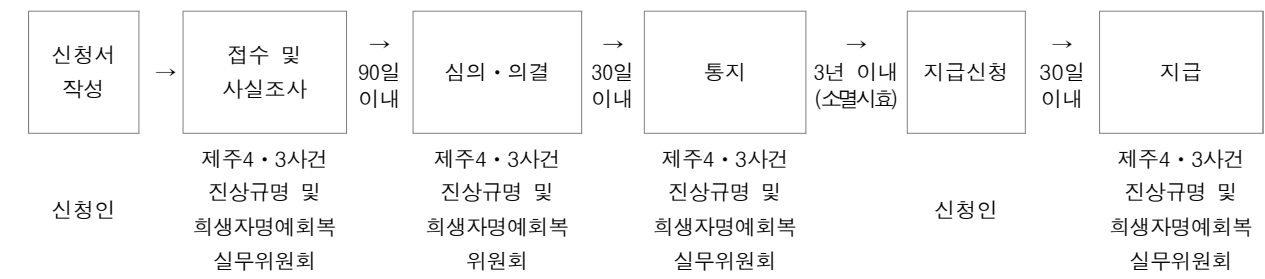
유의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과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등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이후에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지급 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방법

- “신청인” 란에는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의 해당 사항을 적고,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해당 사항을 적되, 상속인 등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여부” 란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항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금 지급 신청서(후유장애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1호 서식(3쪽 중 제3쪽)을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후유장애 부위 및 내용 ※ 희생자로 결정될 당시 보다 기존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악화된 경우만 작성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여부

국가유공자 등 여부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 없음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배·보상 여부 등	[]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실 있음 []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실 없음		
	수령금액	수령일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희생자 결정통지서 1부 나.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1부(후유장애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희생자로 결정될 당시 보다 후유장애의 정도가 악화된 경우 등 희생자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라.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2. 희생자가 사망하여(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유족 결정통지서 1부(법 제16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희생자의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및 신청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 1부(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서(상속인 등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사. 그 밖에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 또는 희생자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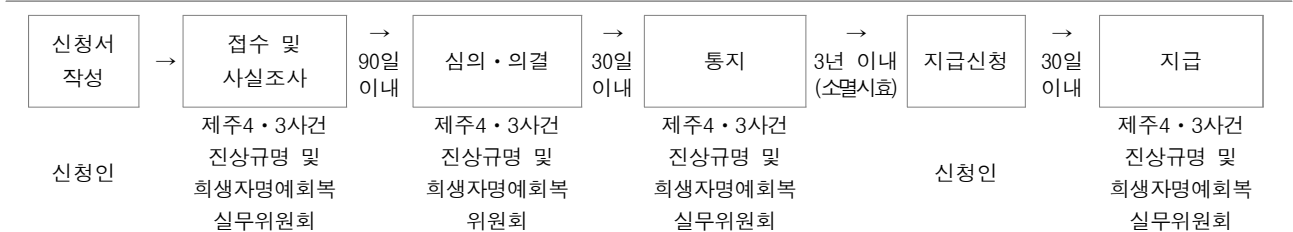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과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등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이후에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지급 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란에는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의 해당 사항을 적고,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해당 사항을 적되, 상속인 등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여부” 란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항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금 지급 신청서(수형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1호서식(3쪽 중 제3쪽)을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수형 사항 ※ 수형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만 작성	[]수형 또는 구금	구속일	출소일	구금(수용)기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또는 벌금액 등 선고 내용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여부

국가유공자 등 여부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 없음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배·보상 여부 등	[]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실 있음 []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실 없음		
	수령금액		수령일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희생자 결정통지서 1부 나.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수형인의 구금사실 및 구금기간, 집행유예 기간, 벌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수형인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희생자로 결정될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추가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라.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2. 희생자가 사망하여(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유족 결정통지서 1부(법 제16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희생자의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및 신청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 1부(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서(상속인 등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사. 그 밖에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 또는 희생자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실무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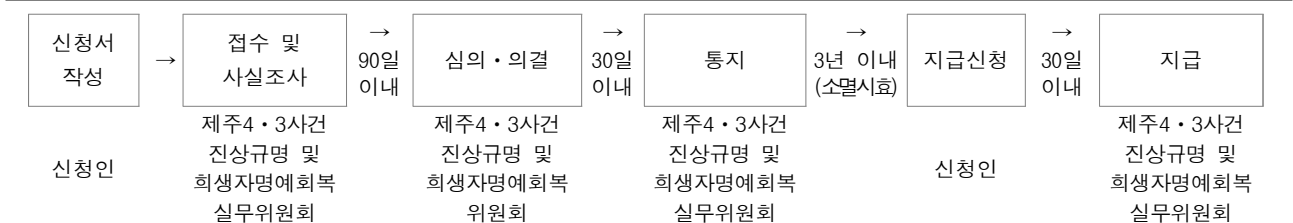
유의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과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등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이후에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지급 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방법

- “신청인” 란에는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의 해당 사항을 적고,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해당 사항을 적되, 상속인 등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 “수형 사항” 란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 []수형 또는 구금” 란에 √ 표를 하고 해당 사항을 작성하고,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집행 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집행 유예 또는 벌금형” 란 √ 표를 하고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여부” 란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항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서

※ 아래쪽의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의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1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2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3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4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첨부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 상속인 등 중 보상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은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 배우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같은 순위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상속인 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상속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임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대장

(접수기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보상결정서

(앞쪽)

접수번호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의						
결정주문						
개인별 지급액	재산상속인					
	금액(율)					

※ 금 명세 및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보상금 명 세	보 상 금	
	법제18조의3에 따른 차감액	
	지 급 액	

결 정 이 유

[지급액 산출]

보상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성명	
주소	

귀하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첨부하는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방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서 1부

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2.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청인

1.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첨부된 보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상속인 등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이후에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지급 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성명		
주소		

1. 귀하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첨부하는 보상결정서正本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보상결정서 正本 2부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청인

동의서(희생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접수번호	제 호			결정일자	
결정주문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1. 신청인은 아래 제주4·3사건 피해에 대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보상 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신청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대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과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동의서(유족 및 상속인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접수번호	제	호	결정일자	
결정주문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1호서식(3쪽 중 제3쪽)을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1. 신청인은 아래 제주4·3사건 피해에 대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보상 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신청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대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과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재심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 구분	[]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의 재심의(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포함) [] 보상금 지급 결정의 재심의	
	신청 사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u>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② 신청인, 신고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u>

제6조(분과위원회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4명

2. 3. (생략)

③·④ (생략)

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

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① ---- 따라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 이내의 -----.

②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

1.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회-----

2.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는 -----
-----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의 -----.

<삭 제>

는 자문기구를 둔다.

<신 설>

제8조(보상심의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상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보상금 지급 신청순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희생자의 보상금 지

<신 설>

<신 설>

제7조 · 제8조 (생 략)

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⑤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심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심의 ·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기구)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료지원, 장애등급 판정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유골의 발굴 등)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및 유골의 발굴 · 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 · 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 ·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나. (생략)

다.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
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
서 발급한 진단서

2.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1.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_____

 _____ 진단서 등

2. ~ 4. (현행과 같음)

②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14조(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 등) ① -----

-- 제13조제5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명부 작성 등) ① -----
---- 제14조제1항-----

-----.

② -----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7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15조-----.

제18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희생자 결정통지서

나.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다.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후유장애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희생자로 결정될 당시 보다 후유장애의 정도가 악화된 경우 등 희생자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수형인의 구금사실 및 구금기간, 집행유예 기간, 벌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수형인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희생자
로 결정될 당시에 제출하
지 않은 추가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2. 희생자가 사망하여(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를 포함
한다) 법 제16조제3항부터 제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속인 등)이 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유족 결정통지서(법 제16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
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
한다)

다.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
등본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및
신청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한다)

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서(상속인 등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한다)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

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에 준하는 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희생자와 신청인
의 관계 또는 희생자의 상
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
지의 기간 중 법제16조의2 제3
항에 따른 신청순서에 따라 해
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둘 이상의 일
간지와 일본 등 국외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청기
간, 신청순서, 접수처, 신청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일
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보상금 신청·수령 위임

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읍·면·동 장

⑤ 법 제16조제3항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순위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이면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상속인 등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상속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

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
다.

⑦ 위원회는 후유장애 또는 수
형인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서류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이나
구금일수 등 산정을 하되, 희생
자 결정 당시 제출된 서류로 장
해등급 판정이나 구금일수 등
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실무위원회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의5 서
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대
장에 이를 기재하고, 법 제16조
의3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
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신 설>

<신 설>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
을 요청해야 한다.

제19조(보상금의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 여
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
호의6 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
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보상심의분
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결정
서 원본을 보관하고, 실무위원
회는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
본 2부와 별지 7호의7 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포함하여 송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
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
여야 한다.

제20조(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1과 같다.

② 장애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장애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2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장애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1에 의한 장애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제13급으로 한다.

⑤ 장애등급은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진단서 등을 근거로 판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새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판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진단서 등으

<신 설>

<신 설>

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진단서 등과 그 밖의 후유장애 관련 간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법제16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1조(보상금 지급 결정의 변경 등) ① 상속인 등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이후에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 등을 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법제18조의4제1항2호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 설>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8 서식의 동의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결정서 정본

2. 대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과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② 보상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료지원금 지급방식(은행계좌)을 준용한다.

제23조(지연 이자) 법 제17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의 본

<u>제14조</u> · <u>제15조</u> (생략) <u>제16조</u>(생활지원금) ① · ② (생략)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u>제15조제3항</u>을 준용한다. <u>제17조</u>(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u>제9조</u>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u>제18조</u>(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신청) ① ~ ③ (생략)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실종신고가 청구된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u>제11조</u>를 준용한다. <u><신설></u> <u>제19조</u> ~ <u>제21조</u> (생략)	<u>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u> <u>제24조</u> · <u>제25조</u>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u>제26조</u>(생활지원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25조제3항</u>----- ----. <u>제27조</u>(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 -- <u>제2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u>----- --. <u>제28조</u>(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제15조</u>-----.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신고 청구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u>제29조</u> ~ <u>제31조</u> (현행 제19조부
--	--

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61